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박보균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건설공사 시행자가 매장유산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 마련됨에 따라 부과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법 제38조제1항 개정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자가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 부과 신설(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 별표 대비표

대통령령 제 호
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6] <신설 2020. 11. 3.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5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
- 2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가.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	법 제38조 제1항제1호	300만원
나. 법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38조 제1항제2호	300만원
다.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	법 제38조 제1항제3호	300만원
라.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이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38조 제1항제4호	300만원
마.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8조 제1항제5호	300만원
바.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공무원의 출입·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38조 제1항제6호	300만원

신·구 별표 대비표

현

행

개

정

안

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6] <신설 2020. 11. 9.>」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5조 관련)」

1. 일반기준」

가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」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」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」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통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」

나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」

- 1)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」
- 2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통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」

2. 개별기준」

위반행위」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」
가. 법 제12조의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」	법 제38조 제1항제1호	300만원
나. 법 제12조의제3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」	법 제38조 제1항제2호	300만원
다. 법 제12조의제2항에 따른 점검이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」	법 제38조 제1항제3호	300만원
라.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」	법 제38조 제1항제4호	300만원
마. 법 제25조의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공무원의 출입·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」	법 제38조 제1항제5호	300만원

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6] <신설 2020. 11. 9.>」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5조 관련)」

1. 일반기준」

가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」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」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」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통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」

나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」

- 1)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」
- 2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통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」

2. 개별기준」

위반행위」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가.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」	법 제38조 제1항제1호	300만원
나. 법 제12조의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」	법 제38조 제1항제2호	300만원
다. 법 제12조의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」	법 제38조 제1항제3호	300만원
라. 법 제12조의제2항에 따른 점검이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」	법 제38조 제1항제4호	300만원
마.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」	법 제38조 제1항제5호	300만원
바. 법 제25조의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공무원의 출입·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」	법 제38조 제1항제6호	300만원